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③(생략) 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Ce클래스 수익증권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②~⑤(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Ce클래스 수익증권 ②~⑤(현행과 같음)
제40조(보수) ①·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제40조(보수) ①·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Ce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5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u> <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u>
<신 설>	<u>부 칙</u> <u>(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u>